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2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 변경 및 일몰규정 삭제 ..	2
---	---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8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2.
- (3) 회 부 일 : 2026. 1.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 변경 및 일몰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지원 규모도 기존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며, 지원 조항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u>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u> 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 ④ (생략)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 <u>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 시행일: 2027.1.1.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8조의2제1항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는 동 지원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음.¹⁾²⁾

- 현행법 제108조의2제3항³⁾은 국고지원금의 사용 용도로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②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③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실제 국고지원은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11.5~12.1%,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11.0~12.1%에 그치고 있어 법정지원 기준에 비하여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되고 있고,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된 금액은 10조 6,211억원으로, 실제 보험료수입액의 12.1% 수준에 불과하였음.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부칙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와 국고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고 일반회계 지원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6619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라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한도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 최근 5년간 국고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예상보험료 수입 (A)	실제보험료 수입 (B)	국고지원금 (C)	예산상 지원율 (D=C/A)	실제 지원율 (E=C/B)	미달 비율 (14%-E)
'21년	664,901	692,270	76,554	11.5	11.0	3.0
'22년	727,540	765,538	86,843	11.9	11.3	2.7
'23년	761,822	815,180	91,494	12.0	11.2	2.8
'24년	846,022	839,520	102,636	12.1	12.1	1.9
'25년	875,646	872,776	106,211	12.1	12.1	1.9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과소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정된 보험료수입액이 아닌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⁴⁾,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회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국고지원금 과소편성과 지원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여 오고 있는 상황임.⁶⁾

□ 또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현행 지원방식이 한시적으로 규정된 이후 일몰기한의 도래에 따라 4차례(2011년, 2016년, 2017년,

4) 2021~2023년의 경우 실제 보험료 수입이 예상 보험료 수입에 비하여 큼.

5) 최근 5년간 예산상 지원율(예산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도 11.5~12.1%로, 법정 비율인 14%에 미치지 못함.

6) 제41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 8. 21. p.90~94
제428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8.26., p.59~61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2022년 말 일몰기한 도래 및 법률 미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적근거의 공백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후 2023년 6월 유효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정부지원금 약 11조원이 교부된 바 있음.⁷⁾

< 건강보험재정 국가 지원 규정 유효기간 설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현황 >

개정일자	관련 내용
2006.12.30	-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07.1.1~'11.12.31)으로 한정
2011.12.31	- 국고 지원기간을 5년 연장(~'16.12.31)
2016.2.3	- 국고 지원기간을 1년 연장(~'17.12.31)
2017.4.18	- 국고 지원기간을 5년 연장(~'22.12.31)
2023.6.13	- 국고 지원기간을 5년 연장(~'27.12.31)

□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그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일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7)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원 기준을 확정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언상 재정당국의 재량 여지를 줄이거나, 또는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취지로 9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재정지원 근거를 보완하거나 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하여 상시화하자는 의견과, 현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유효기간만을 연장하자는 의견 등의 불일치가 있어 일몰 종료 시(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그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하여 2023년 3월 23일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지원의 기준 변경 및 비율 확대를 하는 경우 상당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⁸⁾.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 2027년 국고 지원이 종료될 것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5년간 총 73조 3,175억원(연평균 14조 6,635억원)으로 추계하였음.

<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개정안에 추가재정소요 추계 >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A)	167,904	174,555	195,764	207,108	218,893	964,224	192,845
현행제도 유지시 재정소요(B)	107,820	123,229	-	-	-	231,049	46,2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A-B)	60,084	51,326	195,764	207,108	218,893	733,175	146,635

주: 1.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금(A)는 전전년도 결산 상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20%로 산출(2024, 2025년은 결산상 수입,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의 전망치 적용. 향후 전망 결과 업데이트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지원금(B)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험료 수입 전망치와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실국고지원율(11.9%)을 적용하고, 2026년은 예산액을 준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보건복지부는 5년간 현행법(일몰규정 삭제 가정)에 따른 국고지원 추계액(80조 540억원) 대비 19조 7,136억원(연평균 3조 9,427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총 99조 7,676억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8) 참고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준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전년도 결산상 수입이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작아 지원액이 감소할 수 있음.

(2023년) 전전년도(2021) 결산상 수입 : 692,270억원, 예상 보험료 수입 : 761,822억원

(2024년) 전전년도(2022) 결산상 수입 : 765,538억원, 예상 보험료 수입 : 846,022억원

(2025년) 전전년도(2023) 결산상 수입 : 815,180억원, 예상 보험료 수입 : 875,646억원

< [복지부] 개정안에 따른 2027년~2031년 국고 지원금액 추계 >

(단위: 억 원)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계
현행 유지 (일몰규정 삭제 가정)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998,553	1,066,332	1,138,714	1,216,00	1,298,544	4,623,743
	14%	139,797	149,286	159,420	170,241	181,796	800,540
개정안 반영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예상)	875,646	909,134	998,553	1,066,332	1,138,714	4,988,379
	20%	175,129	181,827	199,711	213,266	227,743	997,676

* '27년·'28년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25년 및 '26년 예산서(공통 II-1)상 예상수입액을, '27~'29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 및 '29~'31년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25~'29년 중기 재정계획서상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30년·'31년의 예상수입액은 전년 대비 보험료 예상수입액 증가율 6.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 아울러,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 기준과 비율을 변경할 경우 어느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조항을 본칙으로 옮기면서 그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지원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로 규정된 지원한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의 논의경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그 지원 비율을 현행과 같은 100분의 14[소병훈의원안(의안번호 제2202976)] 또는 100분의 17[장종태의원안(의안번호 제2202487호)과 남인순의원안(의안번호 제2202564호)]로 하는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 산정기준 명확화 및 일몰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결산상 수입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나, 지원 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상당”의 표현은 “해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변경(14→20%)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수반되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경제부

- 건강보험은 보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의 균형을 고려한 재정운영이 원칙으로, 국고지원 강화에 앞서 건강보험의 자체적 지출 효율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하였고, 누적 적립금은 30

조원에 이르며, 국가 재정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 재정체계 내로 편입할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획예산처

-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독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과 같이 국가 재정체계 내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 국고지원비율 상향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국고지원비율 상향 시 오히려 건강보험 자체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외에도 의료분야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임.
- 일몰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국고지원은 의약분업으로 일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07년부터 한시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일몰 규정 삭제는 당초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몰 규정은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간접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규정 삭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확대될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영구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

감함. 다만, 개정안의 “상당하는”이라는 문구는 지원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하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총 지원 규모 확대(20% → 26%)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여건과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대한의사협회

- 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현행법은 국고지원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년 추계 방식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법정 지원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연장 여부의 불확실성이 반복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운용 계획 수립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 책임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 왔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모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안정적인 국고지원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공급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필수적 요소임.
- 다만, 국고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나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함.

- 이에 향후 국고지원 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 증가 추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지원이 법률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